

Mercedes-Benz Financial**Operations**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Feb. 08. 2018

Contents**1. 범위****2. 수수료 부과기준**

- 2.1. 중도상환(해지) 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 2.2.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 신차대차 금융계약시
- 2.3. 일부상환 수수료
- 2.4. 승계수수료
- 2.5. 중고차금융 전환시의 규정손실금

3. 수수료감면기준 및 권한

- 3.1.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 3.2. 중도해지수수료 - 차량반납시
- 3.3. 승계수수료
- 3.4. 이자및 비용감면
- 3.5. 과태료

4. 변경기록**5. 승인**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1. 범위

적용시기	2018.02. 8 일 부터 적용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부금융▪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상환▪ 일부상환▪ 승계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2. 중도상환(해지) 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부과 기준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 수수료

할부금융 - 승용차 (Passenger Car)					
실행일 계약기간	~ 2010년 6월 30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	2012년 2월 1일부터 ~	2013년 7 월 1일 부터 ~	2015년 1월 1일 부터~
실행 후 6개월미만	미회수원 금의 5%	미회수원금 의 5%	미회수원금 의 4%	미회수원금 의 4%	만기 1년이상인 경우 미회수원금 x 1% +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 - 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만기 1년미만인 경우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 수수료율 신차 2.2% / 중고차 2.0%
실행 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미회수원 금의 4%			미회수원금 의 3%	
실행 후 12개월부터 24개월미만	미회수원 금의 3%	미회수원금 의 4%	미회수원금 의 3%	미회수원금 의 2%	
실행 후 24개월이상	미회수원 금의 2%	미회수원금 의 3%	미회수원금 의 2%	미회수원금 의 1%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 이자	잔여기간이 자	잔여기간이 자	잔여기간이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상환시,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한다.

- 상용차 할부금융계약 (~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행계약)

할부금융계약 - 상용차	
만기 4회 초과기간	미회수원금의 2%
만기 4회 이내기간	잔여기간이자

- 상용차 할부금융계약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계약)

할부금융계약 - 상용차	
만기 1년이상 계약	미회수원금* 1% + 미회수원금 x 1.2% x [남은계약일수 / (대출기간 - 30일)]
만기 1년미만 계약	미회수원금 x 2.2% x [남은계약일수 / (대출기간 - 30일)]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상환시,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한다.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2.1.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부과기준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금융리스

금융리스 - 승용차	
만기 6회 초과기간	미회수원금의 10%
만기 6회 이내기간	잔여기간 이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금융리스 계약
- 2015년 1월 1일 이후 승계된 금융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승계일자를 규정손실금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실행일자로 간주한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금융리스 계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손실금 계산식과 잔여이자의 총액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금융리스 - 승용차	
모든 계약기간	미회수원금 × *수수료율 *수수료율: 신차 2.2% / 중고차 2.0%

운용리스 - 승용차		
중도해지수수료 (차량반납 선택시)	계약실행 후 1년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40%
	계약실행 후 1년이상 2년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30%
	계약실행 후 2년이상	차량가격의 20%
규정손실금 (차량양수 선택시)	만기 4회 초과기간	미회수원금의 10%
	만기 4회 이내기간	잔여기간 이자

기타사항

-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중도상환(해지)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규정)
- 무이자할부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2.2.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 신차대차 금융계약시

2.2.1 일반상품에 의한 신차대차금융

할부금융 / 금융리스			
실행일자 계약기간	~ 2013년 6월 31일 까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 후 6개월미만	미회수원금의 4%	미회수원금의 4%	할부금융 ▶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준을 따름
실행 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3%	
실행 후 12개월부터 24개월미만	미회수원금의 2%	미회수원금의 2%	
실행 후 24개월이상	미회수원금의 1%	미회수원금의 1%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잔여기간이자	금융리스 ▶ 2.1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부과기준을 따름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운용리스	
계약실행 후 1년 미만	미회수원금의 6%
계약실행 후 1년이상 2년미만	미회수원금의 4%
계약실행 후 2년이상 3년미만	미회수원금의 3%
계약실행 후 3년이상	미회수원금의 2%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기타 사항

2.2 에 정의된 “신차대차 금융계약시”는 기존 계약자가 새로운 금융계약으로 신차를 추가 구매한 경우,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기존계약을 승계받은 자(중고차매매상을 포함)가 기존계약을 중도상환(해지)할 때 적용된다(운용리스상품의 경우 양수선택시에만 적용).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면 2.1 에 정의된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이 적용된다.

만약, 신규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기존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계약 실행이 확인된 후(기존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규정손실금을 정산(환불)한다.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2.2.2 키투키(Key2Key) 프로그램에 의한 신차대차금융

고객이 Key2Ke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기존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존계약은 스타클래스 딜러가 승계하고, 승계받은 계약을 스타클래스 딜러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의한 수수료는 감면된다.

추가적으로, 기존계약을 스타클래스 딜러로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승계수수료에 대해서도 키투키(Key2Key)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승계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2.3 조인트 리텐션(Joint Retention) 프로그램에 의한 신차대차금융

고객이 조인트 리텐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차를 구매하고, 기존계약을 계약만기 일자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리스상품의 경우 양수에 의한 규정손실금에 한함)

2.3. 일부상환수수료

할부금융 - 상용차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할부금융 - 승용차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금융리스

2.1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부과기준 적용

운용리스

없음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2.4. 승계수수료

할부금융
승용차 : 해당사항없음 상용차 : 미회수원금의 1%, (미회수원금의 1%가 단순승계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단순승계수수료 적용) 단순승계수수료 : 90,000 KRW (승계일자 기준 전후 3 개월 이내에 신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승계받는 경우, 법인계약자가 CEO(또는 보증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CEO(개인)가 법인(보증인입보)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족내 승계, 계약자와 보증인사이의 승계)

금융리스
미회수원금의 1%, (미회수원금의 1%가 단순승계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단순승계수수료 적용) 단순승계수수료 : 90,000 KRW (승계일자 기준 전후 3 개월 이내에 신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승계받는 경우, 법인계약자가 CEO(또는 보증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CEO(개인)가 법인(보증인입보)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족내 승계, 계약자와 보증인사이의 승계) 만기 2 개월 이내에 승계하는 경우 단순승계수수료 적용

운용리스
미회수원금의 1%, (미회수원금의 1%가 400,000KRW 보다 적은 경우 400,000 KRW 적용) 만기 2 개월 이내에 승계하는 경우 400,000 KRW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승계수수료 200,000 KRW 적용 (승계일자 기준 전후 3 개월 이내에 신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승계받는 경우, 법인계약자가 CEO(또는 보증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CEO(개인)가 법인(보증인입보)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족내 승계, 계약자와 보증인사이의 승계)

기타사항

계약의 승계는 금융계약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월납입액이 남아있어야 가능하다. 즉, 월납입회차가 남아있지 않은 금융계약은 승계가 불가능하다.

계약자가 계약기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자 이후 3 개월 이내에 계약이 승계될 경우에는 는 승계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2.5. 중고차금융 전환시의 규정손실금 부과기준

금융리스		
실행일자 계약기간	~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2015 년 1 월 1 일부터 ~
6 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4%	<u>미회수원금 * 2.0 %</u>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3%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2%	
24 개월 이상	미회수원금의 1%	

운용리스	
12 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4%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3%
24 개월 이상	미회수원금의 2%

기타사항

중고차금융전환은 다임러에서 인증된 중고차 사업자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2.5 에 정의된 규정손실금 부과기준은 실행되는 중고차금융계약의 원금이 해지되는 금융계약의 미회수원금보다 클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실행되는 중고차금융계약의 원금이 해지되는 계약의 미회수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고차금융계약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2.5 에 정의된 규정손실금이 적용되고, 차액(=미회수원금 - 중고차계약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1 에 정의된 규정손실금이 적용된다.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3. 수수료감면기준 및 권한

3.1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감면

	승인권한구분	승인권자
“기타- 수수료감면대상조건”에 명시된 경우	기초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End IR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퍼레이션 부서장
	기초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End IR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퍼레이션 부서장 CFO

기타사항

“종료수익율(End IRR)” 은 계약의 종료요청일자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율(IRR) 이다

3.2. 중도해지수수료 감면 - 차량반납시

	승인권한구분	승인권자
만기이전 차량반납	차량반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퍼레이션 부서장 CFO

3.3. 승계수수료 감면

	승인권한구분(승계수수료기준)	승인권자
승계수수료	상용차할부 및 금융리스 : 200,000won 운용리스 : 200,000 w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퍼레이션 부서장
	상용차할부 및 금융리스 : 200,000won 이하 운용리스 : 200,000won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퍼레이션 부서장 CFO

3.4. 이자 및 수수료 감면

	승인권한 구분	승인권자
이자 및 수수료 감면 (시스템 에러, 시스템입력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고객에게 안내되었을 경우에 해당함)	5,000 KRW 이하 (이자항목만 적용)	수납담당자
	50,000 KRW 이하	고객지원팀장 / 계약관리 팀장
	100,000 KRW 이하	부서장
	100,000 KRW 초과	부서장 & CFO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3.5. 과태료및 범칙금 감면

	승인권한구분(승계수수료기준)	승인권자
사전통지안내 배송실패	사전납부시 할인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관리 매니저
공식적인 감면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관리 매니저

기타 - 수수료 감면대상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1. 계약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고, 종료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금융계약이 실행되었을 경우, 감면된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규금융계약이 실행되기전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신규금융계약 확인 후에 환불한다.
2.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 MBFSK (금융영업직원 포함)의 실수 또는 오류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감면될 수 있다.
3. MBFSK (금융영업직원 포함)의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고객의 불만접수가 되었을 경우, 실수 또는 오류와 관련된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다.
4. 우량고객의 요청
 - * 최소 2 회 이상 MBFSK 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였으며, 최대 60 일 이하의 연체경력이 있을 경우 우량고객으로 정의한다.
5. 자연재해 또는 고객과실 50% 미만의 사고로 인한 전손의 경우, 기초 수익율(IRR) 을 충족시키는 중도상환(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이 부과된다.
6. 위에 정의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례별로 감면 요청 될 수 있으며, CFO 와 오퍼레이션 부서장의 승인이 요구된다.

* 모든 감면사항에 대한 확정은 당사의 담당 직원과 협의 후 진행됩니다.